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연월일 | 2026. . . |
| 발 의 자 | 추은희 의원    |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추은희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추은희 의원(1인)

찬 성 자: 강승수·김영길·김영태·김재우  
양진오·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8인)

## 1. 제안이유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

마.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바. 조직(안 제6조)

사. 지원대상(안 제7조)

아. 사무의 위탁(안 제8조)

자. 감독(안 제9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1조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나. 부서검토: 위생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구미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장애인 등의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4.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7.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위탁시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 6. (생략)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

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

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11.(생략)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

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2024. 9. 2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위생과

|   |   |
|---|---|
| 조 례 명   |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li><li>▪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li></ul></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안 제1조)</li><li>○ 정의(안 제2조)</li><li>○ 시장의 책무(안 제3조)</li><li>○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li><li>○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li><li>○ 조직(안 제6조)</li><li>○ 지원대상(안 제7조)</li><li>○ 사무의 위탁(안 제8조)</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이견 없음</li><li>○ 조례의 목적, 정의,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개정됨</li></ul>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li><li>○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li><li>○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li></ul> |   |

#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2항 : 센터의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
  - 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장애인 등의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홍보
  -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 시장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조직) 제1항 : 조직 구성원의 인건비에 관한 사항
  -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에 필요한 직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 및 제6조의 재정수반요인과 관련,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위생과 식품안전팀 이채인(☎054-480-5592)